

國際仲裁法院(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과의 비교를 통한 仲裁 活性化

金 聖 洙*

- I. 世界化와 仲裁의 紛爭解決機能
- II. 國際·國內 仲裁機能의 比較
 - 1. 國內 仲裁機能의 比較
 - 2. 國際 仲裁機能에 있어서의 比較
- III. 結 語

I. 世界化와 仲裁의 紛爭解決機能

세계화에서 國際仲裁는 더욱 국제분쟁 해결기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료되어 약 50년 동안의 이데올로기 냉전의 대립상태 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계기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대립이 와해되고, 1990년 중반부의 유럽공동체(EU), 북미경제공동체(NAFTA),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등의 지역경제공동체화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지구상의 정치, 경제 질서가 1995년 1월 1일을 계기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기구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즉, 世界經濟秩序에 있어서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같은 경제협력과 분쟁해결의 제도장치를 탄생시키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전쟁'이라는 2차 대전후의 새로운 세계적 전환기가 도래한 것이다. 새로운 세계경제전쟁의 도래는 전통적인 국경의 개념을 희박하게 하면서 자유로

* 중재인, 아태합동법률 변호사.

운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단위의 세계시장을 형성시키고, 지구상의 자원과富力의 분배를 위한 국가단위의 경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세계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배정은 인간의 존엄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경쟁제도가 '21세기의 세계질서'로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세계시장, 새로운 세계경쟁, 새로운 세계적 경제전쟁의 활발한 전개는 국제 및 국내거리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증가되는 국내 및 국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많은 법적 분쟁을 필연적으로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점증하는 필연적인 국내외적인 법적 분쟁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적 분쟁해결기능이 뒤따르지 않은 경우 지구상의 경제상태의 혼란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정치상태의 혼란까지 유도, 지구상의 經濟秩序는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하에 세계무역기구의 탄생과 더불어 신속한 WTO내의 분쟁해결기구도 아울러 동반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세계경제질서를 위한 世界紛爭解決機能은 단순히 국제중재 활동에 종사하는 국제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할 문제는 아니고, 각 국가정부의 노력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공적인 기능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의 국제경제활동에 따른 분쟁해결기능의 효율적인 향상은 법원과 같은 국가사법기능을 통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더불어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적인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한 비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도 아울러서 점차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大韓商事仲裁院의 분쟁해결기능과 가치에 대한 개평가와 활성화의 당위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일한 상설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설립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국내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법원을 보완, 대체하는 代替的 紛爭解決(ADR) 기능을 활발히 전개, 이른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의 장점인 신속성과 비밀유지, 전문성의 활용, 경비의 저렴을 통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국내외적으로 쌓아왔다. 또한 국제계약의 분쟁해결기능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마련한 표준기능조항이 많은 한국기업의 국제계약에 삽입됨으로 인하여 국제상

거래에 관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기능도 점진적으로 증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성취해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기능을 좀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ICC국제중재법원과 같은 서구사회의 常設仲裁機關과 비교, 그 차이점을 조명, 비교하는 노력은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걸맞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상거래 분쟁해결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겠다. 법조 실무가의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

II. 國內·國際 仲裁機能의 比較

1. 國內 仲裁機能의 比較

국내 중재기능의 검토는 국내중재의 분쟁해결기능이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의 분쟁해결기능과 대비되는 점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고, 우선 중재제도의 장점이 국가사법기관의 분쟁해결기능과 비교하여 네 가지 競爭力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즉,

① 첫째, 중재는 국가사법기관의 당해심급의 변론절차에서의 소요되는 시간에 비교하여 중재심리절차에 의한 소요시간이 비교적 평이한 절차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이고, 더욱 중재절차는 단심원칙으로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있을 뿐이지만, 국내사법기관은 특히 상소경향이 높은 우리의 경우 상소심판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비교하면, 중재제도는 時間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② 둘째, 중재에 있어서의 비용은 분쟁제기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나, 즉, 법원에 대한 인지대와 비슷하지만 그 이외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검증과 감정비 등이 거의 소요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급심에 소요되는 상소비 등의 소요가 절약이 되는 紛爭費用面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인정된다.

③ 셋째, 현대사회의 다원화로 인하여 전문성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국내거래에서의 분쟁해결도 국가사법기관의 심판관인 법관의 전문성에 대한 기여로 인하여 사실판단이나 법률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재제도에

있어서는 최초의 중재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륜을 고려, 특정사안에 통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있는 심판부 선정을 할 수 있으므로 審判部의 경쟁력이 인정된다.

④ 넷째, 국내상거래에 관련된 계약상의 분쟁은 상거래의 비밀성이 중요한바, 따라서 분쟁발생의 경우와 분쟁해결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업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공개 원칙 때문에 기업비밀의 보장이 불가능하게 되나, 중재심리의 폐쇄성은 기업비밀보장에 유리하고, 따라서 秘密性保障面에서 중재제도는 아주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중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국내사법기관의 분쟁해결기능에 있어서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효율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중재의 본질상 국가사법기관에 대한 우월성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하지 아니한 국내중재제도의 현실로 인하여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性化方案이 고려될 수 있겠다.

① 첫째, 국민에 대한 상사중재제도의 선택을 위한 기회에서 기존 상설중재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모든 조직체 운영은 유교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관료주의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사회봉사적인 기능(Public Service)보다는 授惠的 機能이 강조되어 온 성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분쟁해결능력이라는 서비스 기능에 입각한 중재기구의 운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상설중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국가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못지않게 대우와 긍지를 높여주고, 그 대신 중재기관에 찾아오는 당사자나 분쟁사건 자체에 임하는 자세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봉사정신에 기초한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재기관 근무자의 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② 둘째, 중재심판부를 구성하는 仲裁人의 자세나 자질에 관한 再教育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국내사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그 분야에 관여한 교수, 기업인 또는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적합하다고 예상되어 중재인명부에서 선발되고, 선정된 중재인들은 바쁜 일정중에서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판정부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게 되는데, 대부분 중재인들의 분쟁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시각은 마치 국가사법기관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사건을 보는 듯한 직권심리주의적 시각이 스며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보호자적 또는 직권심리적 자세는 당사자로 하여금 좀더 자유로운 상거래에 따른 입장을 심문기일에 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억제하여 오히려 경색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중재기능이 사회도덕적 정의의 개념도 중요하나, 상거래의 특수성에 의한 형평성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당사자주의적 자세가 필요하고, 중재인으로 선정된 구체적 관정부에 대한 사법기능과 다른 중재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중재기능의 재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재교육에 드는 경비나 참여한 중재인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은 일이나, 국내중재가 국가사법기능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審判姿勢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또 하나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셋째, 중재기능의 본질과 중재인들의 노력, 중재기관의 개선 등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득하여 그 효율성을 활용하지 아니 하면, 이는 '구경꾼 없는 전시장'에 불과한 제도가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선전계몽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사실상 노력 이외에 중재제도가 가장 근접하게 이용될 수 있는 분쟁이 많은 중소기업 거래분야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권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적극적인 立法努力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작년 1995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변호사회의에 제출된 미연방대법원장인 랭키스트의 미국 사법의 장기계획위원회의 설립에 즈음해서 '21세기후 점증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소송당사자와 공익을 위한 균형적인 봉사를 위해서 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한 점은 한국의 사법제도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재제도의 미래에 더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국내중재에 있어서의 경쟁력향상과 향상된 분쟁해결기능을 갖는 국내중재제도의 이용은 다음에 검토하려고 하는 國內仲裁機能의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2. 國際 仲裁機能에 있어서의 比較

(1) 國際 仲裁機能의 競爭性

국제중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중재기관의 경쟁력강화는 양면적인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① 첫째, 특정국가내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해결하는 국제 분쟁해결기능에 관련한 경쟁력 강화이고, ② 둘째, 자국의 중재기관에 대비되는 다른 국가의 중재기관의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련된 경쟁력 강화이다. 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국내 경쟁력의 강화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국가사법 기능에 대비되는 중재제도의 본질을 강조하여 충분히 홍보, 이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가 있고, 덧붙여 특히 국제계약사건에 관련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기능이 국가사법기관의 분쟁해결기능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차이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할 수가 있겠다. 첫째, 국내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 판결의 효력이 영토성의 제약을 받고, 또한 판결에 관한 집행력을 위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패소자의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집행력을 받기 위한 법원판결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반면, 국제계약분쟁에 관련된 중재판정은 1958년 제정된 뉴욕협약에 의해서, 즉, 뉴욕협약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내법원은 국내중재판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도 외국중재판정을 국제예양의 차원에서 국내중재판정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대비하여 분쟁해결의 최종효력에 관한 차이점을 강조할 수 있다. 물론 국내중재 활성화에서 언급한 중재능력의 본질적인 우수성은 국제분쟁해결기능에서 사법기관의 정체성을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후자의 各國仲裁機關 사이의 경쟁성은 후술한다.

(2) ICC 國際仲裁法院의 競爭力

국가별 국제중재기관의 기능적 비교에 관한 검토가 또 하나 자국에 중재기능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고, 본고에 있어서도 이 점에 관한 검토가 주된 내용이 된

다. 이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국제중재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인정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C國際仲裁法院의 중재제도, 제도운영, 그 효능에 대해서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대한상사중재기능의 경쟁력 강화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① 첫째, 중재기구의 구성이 국제중재기능의 효율성과 세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구의 구성 자체가 국내성을 탈피하여 國際的인 規模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ICC중재법원의 중재기구는 1985년부터 사무국 아래 각 5개 대륙을 관장하는 자문위원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팀장을 맡고, 지구 어느 곳에 서나 신청되는 중재사건도 처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재기구 구성이 예산의 한계 또는 운영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ICC중재법원과 같은 광범한 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우선, 상설 중재기구의 자문위원이 아닌 중재인단 구성만이라도 국제적으로 갖추는 필요가 있겠다. 즉, 대한민국 국적 중심으로부터의 중재인 선정을 탈피하여 범세계적으로 5대륙을 망라한 중재인단을 구성할 가치치고 있고, 국제사건의 당사자는 그와 같은 범세계적인 중재인단 중에서 자기의 분쟁을 심판해줄 세계적인 중재인을 선정할 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물론 ICC중재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산하기구로 되어 있고, 국제상업회의소가 세계각국의 상업회의소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재인단 구성이 용이한 점도 있지만, 이와 같은 장점을 실려서 설치한 ICC중재법원은 설립 이래로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오고 있는 중재기관이 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국제적인 중재인단의 구성은 범부법인 구성원으로 한국에 와있는 외국변호사의 적극적 참여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② 둘째, 구체적인 국제분쟁사건이 중재기구에 신청된 이후 중재심판부가 구성되고, 동 심판부는 동 사건을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으로 나누어 심리해결하게 되는데, 동 분쟁중재심리절차의 과정은 각 국가 사법기관의 변론심리가 각양각색인 것처럼 중재심리절차에도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중재절차의 신속성 요건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주장이나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을 좁혀서 명백히 정리한 후 심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바, 爭點整理事項(Terms of Reference)의 적극적 도입이 고려될 수 있겠다. 예컨대, ICC중재법원의 중재심리절차는 반드시 쟁점정리사항(Terms of Reference)이라는 양당사자의 합의내용을 도출, 사실적인 점과 법률적인 점에 있어서의 당사자사이

의 다수는 부분을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쟁점정리사항은 분쟁을 심판하는 중재인 측에서나 분쟁에 관한 사실 주장, 증거제출과 법률적인 논쟁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초부터 꼭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내중재심리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정리사항의 채택을 당사자 동의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쟁점정리사항을 효율적으로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사안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심리제도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해결기능은 분쟁해결기구와 분쟁당사자의 공동의 노력, 즉, 국제계약의 당사자들과 중재기구의 공동노력에서 향상될 수 있으므로 양측의 노력을 필요한 쟁점정리사항의 채택을 강조하고 싶다.

③ 셋째, 仲裁判定文을 배출시키기 전에 중재기구의 사무국에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기능은 특수한 의미를 부여받는데, 특히 분쟁내용이 세계 여러 국가의 법률을 관장하게 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서도 편견적인 내용을 판정내릴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사무국에서 판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내려주는 절차는 중재기관에서 내리는 중재판정의 무흠결을 더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ICC중재법원의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문의 초안을 반드시 사무국에 먼저 보내 사무국에서 사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손질을 가하고, 그 후 최종적으로 ICC중재법원의 판정문으로 송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세계적인 분쟁해결기능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서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중재기구의 사무국이 판정부의 중재판정문 초안을 검토할 때 주문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판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는 삼가해야 할 내용이나 판정부가 간과한 숫자적 계산 등 명백한 오류, 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지적함으로써 보다 품위가 있는 중재판정문을 분쟁당사자에게 배출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④ 넷째, 迅速한 審理와 判定을 위한 사무국과 판정부에서의 시간을 절약하는 보다 심도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컨대, 사무국에서 분쟁당사자로부터 중재신청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그 접수통

지와 더불어 판정부구성을 일정한 시간내에 완수하도록 사무국에서 규정하고, 또, 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의 가부연락을 일정한 기간내에 회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리진행에 있어서도 중재법정으로서 효율적인 심리장소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예컨대, 꼭 상설중재기구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 아래 중립적인 호텔이라든지, 학교 등 상설중재기구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판정부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판정문이 완성되어 송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판정초안에 대한 디스켓을 같이 송부하여 사무국에서 타자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적인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시간을 절약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ICC중재법원에 있어서의 송달업무는 반드시 DHL 등 속달우편을 이용하는 사무국의 배려도 이와 같은 시간절약의 점에서 특히 주의할 만하겠다.

⑤ 다섯째, 仲裁費用의 합리적인 결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 중재비용의 저렴화는 각 국가 중재기구의 운영예산의 범위 또는 각 중재인에 대한 보수 등 쉽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국제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의 중재기관과 비교하여, 또는 그 국가의 사법기관과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기구로 정착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비용의 조정은 수시로 그 국가의 경제사정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다면, 이는 훌륭한 국제중재기능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⑥ 여섯째, 국제중재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의 구성과 준비만 가지고는 곧장 훌륭한 국제중재기관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으므로 중재기구의 임원들은 국제상거래관계를 다루는 법조인들의 모임이나 또는 변호사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국제중재기능의 효율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홍보와 더불어 국제계약을 초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국 중재기관의 標準仲裁條項이 많이 이용되도록 권장,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예컨대, ICC중재법원은 많은 홍보물을 간행하여 국제법조인 모임에 수시로 사람을 파견하여 배포하고 있고, ICC 중재시설을 견학시키면서 ICC의 중재기능을 선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글과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ICC중재법원은 중재사전처리에 관한 많은 통계자료를 사무국에서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여 많은 국제변호사나 상거래당사자

에게 알려줌으로써 ICC국제중재법원의 국제상거래사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노력은 ICC중재법원은 많은 국가의 중재기구와 서로 중재협약을 체결하여 중재시설을 공유하고, 중재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중재기능의 상호보완을 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인 중재협약체결노력도 국제중재기능 활성화의 길이라고 사료되는 것이다.

Ⅲ. 結 語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설상사중재기구인 大韓商事仲裁院의 국제중재 및 국내 중재기능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인 세계시장에서 도약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시기 적절한 노력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동 중재원의 적극적인 자세는 그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 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즉 지금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이 영위해온 역사와 과정을 기초하여 점진적인 개선, 시간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급진적인 노력은 오히려 중재의 결과들 손상,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5년 또는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대한상사중재원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그 목표를 인내심을 가지고 달성한다는 자세를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노력도 국민이 요구하는 분쟁해결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은 비록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부기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국가의 법질서를 영위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상설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법개혁의 대상의 일부로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법개혁노력의 일부로서 위에 검토한 국내중재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국제중재기능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한국 법조인의 노력과 지원이 같이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굳건한 중재기능을 통한 세계속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 國際競爭力은 한반도의 통일에도 필요한 법조문화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

AWARD
SENTENCE

CCI

Chambre de Commerce Internationale
COUR D'ARBITRAGE

COURT OF ARBITRATION
COUR D'ARBITRAGE

CASE N° 5169 / GAA

AFFAIRE N°

ABC COMPANY LIMITED (Hong Kong)

v/

XYZ INDUSTRIES CORPORATION (Taiwan, R.O.C.)

This document is an original of the final award rendered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 * * * *

Ce document est un original de la sentence rendue conformément au Règlement de la Cour d'Arbitrage de la CCI.

Soung Soo Kim, Arbitrator
Arbitrator's Addres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URT OF ARBITRATION
HELD AT SEOUL, KOREA

ABC CO., LTD.,
Claimant.

v.

XYZ INDUSTRIES CORP.,
Defendant

NO. 5169/GAA

ARBITRAL AWARD
GRANTED AFTER HEARING
on May 26 and 27, 1986

The Honorable Soung Soo Kim, sole arbitrator of the above entitled case, appointed by the I.C.C. on June 18, 1985, grants this ARBITRAL AWARD.

PROCEDURE

In the absence of applicable I.C.C. procedural rules, rules applicable to Seoul, Korea were applied. In all other cases, I.C.C. procedural rules were applied.

APPEARANCES

1. Mr. LCN made an appearance and gave testimony for Claimant.
2. Mr. CYWC appeared as Claimant's attorney.

3. There were no appearances for Respondent despite the fact that Respondent's President JCSL and Respondent's Attorney SBC both acknowledged receipt of proper notification of the Summons and Hearing dates, by letter. Article 15 § 2 was invoked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as if it was conducted in the presence of all parties. See attachments 1 (Summons), 2 (Return receipt), 3 (letter from JCSL).

EXHIBITS

1. Claimant submitted 26 exhibits, which were reviewed by the arbitrator.
2. Defendant submitted 3 exhibits with its Answer which were reviewed by the arbitrator.

FACTS

Claimant, seller and Defendant, buyer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on June 25, 1984, (Contract No. 84037) for "about 5,500m Sarawak Round Logs." The Shipment date in the contract reads "Around July 15, 1984." Payment was to be by a confirmed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covering 100% invoice value" which should have reached Claimant "at least fifteen (15) days before the date of shipment." The contract also stated that: "If the Buyer fails to provide such letter of Credit for the Seller, the Seller shall reserv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Claimant notified buyer "our cargo all ready for shipment" by telex on July 4, 1984 and requested buyer to nominate the vessel and to open the letter of credit, immediately. Defendant refused to deliver a letter of credit or nominate vessel and expressly repudiated the contract by a letter dated July 14, 1984. Claimant, in order to mitigate losses (due to a rapid decline of market price) resold the logs on August 6, 1984 at a lesser price.

CHOICE OF LAW

The nature of Defendant's breach is so basic, the arbitrator is unconvinced that there is a conflict of laws problem. A refusal to pay for contracted goods is a material breach in most jurisdictions. However if there is a conflict, the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shall govern. In the contract at issue there was no stipulation as to choice of law. The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is the law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dispute arising out of the contract at issue. In the present case, three factors are relevant : (1) the countries where the parties are located, (2)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and (3)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was to be performed.

(1) Defendant is domiciled in Taipei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which is also hi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Plaintiff is a company incorporated in Hong Kong but has appointed a representative continuously located in Taipei where he maintains a business establishment (office, staff and facilities) and conducts business in Taiwan. By this representative (namely, Air LON)

(2) The contract at issue was negotiated, signed, and executed in Taipei.

(3) The contract was to be performed on the part of Defendant in Taiwan, R.O.C.

ISSUE DECIDED

The arbitrator has decided that the Defendant, buyer materially breached

its contractual obligations by failing to deliver a letter of credit. Claimant, Seller was under no obligation to have the logs ready until fifteen days after the letter of credit was established. Had the Defendant, buyer delivered the letter of credit, Claimant, buyer would have been obligated to have the logs ready for shipment no sooner than "Around July 15, 1984." Consequently even had Claimant, seller been unable to perform before July 10, 1986(as Defendant buyer alleges) this would have been timely under the contract. The evidence is uncontroverted that the logs were ready for the buyer's inspection on July 4, 1984, although there was no inspection.

As confirmed in a letter dated July 14, 1984 Defendant President JCSL repudiated the contract. Claimant sold the logs as and for mitigation on August 6, 1984 for US\$393,597.44(plus freight). Thi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contract price would have been. Buyer was able to purchase a lesser amount of logs, some of which were at less than the original contract price, from a different location.

COSTS

Defendant XYZ Industries Corp. shall bear all costs of this arbitration, total to be set by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attorney's fees and costs, including airfare, food, & lodging for the hearing.

DAMAGES

Claimant ABC Co., Ltd. is awarded the following damage from Defendant XYZ Industries Corp. : US\$38,344.32 plus 5% interest per year from August

6, 1984. This is the difference and lost profit between the original contract and the mitigation contract. Since the original contract was for 5,500m³ ±10%. We hold that the purchase of 4,928.5149m³(the mitigation contract's actual sale amount) would have been full compliance under the original contract, since Defendant, buyer could have elected to nominate a smaller vessel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Dated : July 26, 1986.

SOUNG SOO KIM, ARBITRATOR

ADDENDUM

The Arbitrator is advised that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t its July 24, 1986 session, approved the foregoing final award. At that time, The court fixed the Arbitration cost at 1,800.00 U.S. Dollars as and for Administrative expenses plus 3,455.00 U.S. Dollars as and for the Arbitrator's fees.

Dated : July 26, 1986.

SOUNC SOO KIM, ARBITRATOR